

이달의 공정 주거(Fair Housing) 팁

팁9 - 거주지 내의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

“집주인이 아파트 단지에서 마리화나 사용을 금지했어요. 저는 의료용 마리화나 처방전도 있고, 정당한 편의 제공 요청도 했지만 집주인은 제 요청을 거부하면서 마리화나는 어쨌든 불법이니까 법도 자기편을 들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마리화나가 합법이 되었으니 제가 처방전이 있건 없건 방 안에서 피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법률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새로운 법률하에서도 유희나 치료의 목적과 관계없이 임대인은 마리화나 사용을 허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방법하에서 마리화나 사용은 여전히 불법입니다. 세입자가 방 안에서 의료용 마리화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임대인이 이 요청을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주법에서는 합법이라도, 연방법에서는 불법인 행위를 허용하도록 임대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섹션 8과 같은 연방 정부 지원 주택에서는 여전히 마리화나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Department of Housing & Urban Development(HUD, 주거 및 도시 개발부)는 지역 공공 주택 당국 및 연방 정부 지원 주택의 소유주에게 현재 세입자의 마리화나 사용을 근거로 한 퇴거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안내서를 발표했습니다.

취해야 할 조치: 집 안에서 의료용 마리화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임대인은 이러한 편의 제공을 수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반대하는 이유가 마리화나의 연기 때문이라면, 다른 형태의 의료용 마리화나의 사용은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연방 기금 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에 대한 지역 공공 주택 당국의 규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편의 제공 요청을 거부하거나 상호 협력 과정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지역 공정 주거 기관, California 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DFEH, 공정 고용 및 주거부) 또는 federal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HUD, 연방 주거 및 도시 개발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임대인에게 집행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HUD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시려면 [800-669-9777](tel:800-669-9777)번으로 전화하시거나 다음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s://portal.hud.gov/hudportal/HUD?src=/program_offices/fair_housing_equal_opp/complaint-process

DFEH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시려면 [800-884-1684](tel:800-884-1684)번으로 전화하시거나 <http://www.dfeh.ca.gov/complaint-process/complaint-forms/>를 방문하십시오.

공정 주거법은 다음 특성을 근거로 한 거주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종, 종교, 출신 국가, 피부색, 성별, 혼인 여부*, 혈통*, 가족 상황, 장애, 성적 지향*, 소득원.*

*는 연방법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캘리포니아에서는 차별이 금지된 항목을 나타냅니다.

고지 사항: 공정 주거법 이달의 팁 프로그램은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법적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 MHAS, 지역 공정 주거 의회 또는 기타 개인적으로 선택한 변호사에게 연락하십시오.

공정 주거법 이달의 팁은 U. S. Dept. of Housing & Urban Development Fair Housing Initiatives Program(주거 및 도시 개발 공정 주거 계획 프로그램)의 보조 기금(보조 기금 #FEOI160050-01-01)으로 제공됩니다.